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가상융합산업진흥법시행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상융합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20352호, 2024. 2. 27. 공포, 2024. 8. 28.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대상, 임시기준의 제안 및 마련 절차, 분쟁해결절차의 마련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2조, 제3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

나.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안 제4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사업자 및 관련 기관·단체·협회 등을 대상으로 가상융합산업 현황, 규제개선 과제 발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안 제5조)

가상융합 플랫폼을 통한 연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연 거래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월간 활성 이용

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

라. 전문인력의 양성 등(안 제6조, 제7조)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교재의 개발 지원, 교육·연수·연구 지원, 해외 우수 전문인력의 발굴·유치 등 정부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산업 특성화 대학등(대학·대학원·대학부설연구소)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기술개발의 촉진(안 제8조)

정부가 가상융합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표준화 지원(안 제9조)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에 드는 비용 등 표준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사. 전담기관의 지정·운영(안 제10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기관은 가상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아. 협회의 설립(안 제11조)

가상융합사업자가 협회를 설립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하는 서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자.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안 제12조)

지역별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가상융합산업 지원센터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차.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지원(안 제13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으로 자금·인력·기술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기업 운영에 필요한 공간 제공 등을 명시함

카. 시범사업의 실시 및 지원(안 제14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범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시범사업의 목적 및 추진체계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시범사업의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과평가를 하도록 규정함

타.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안 제15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가상융합서비스의 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를 하도록 하되,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의 분야와 관련된 가상융합사업으로서 민간이 서비스하는 것이 부적합한 사업 등은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파. 임시기준의 제안 및 마련 등(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가상융합사업자, 협회 등이 임시기준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구체화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상융합산업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과급효과, 이용자 편익, 안전성 및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임시기준을 마련하거나 정비하도록 규정함

하. 분쟁해결절차의 마련(안 제19조)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 중 가상융합 플랫폼을 통한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연 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3개월 평균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10,000명 이상인 경우 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와 사업자 사이 및 이용자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4. 0. 00. ~ 0. 00.) 예정

2) 행정규제 : 규제심사 전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이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기관의 장에게 그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가상융합사업자
2. 가상융합산업 관련 기관·단체·협회
3.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이용자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사업자, 기관·단체·협회

②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할 수 있다.

1. 가상융합산업 및 가상융합사업자 현황
2. 가상융합기술 및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이용·보급 현황
3. 가상융합산업의 인력 현황 및 인력 수요 전망
4. 가상융합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투자 규모
5. 가상융합산업 관련 수출 현황
6.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규제 개선 과제 발굴에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가상융합산업 기반조성

제5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가상융합사업자 중 인터넷 홈페이지,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가상융합서비스 등의 제공·이용을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가상융합 플랫폼을 통한 연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가상융합 플랫폼을 통한 연 거래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3.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련 기관·단체·협회 및 가상융합사업자 등에 대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

다.

1.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교재의 개발 지원
2.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연수·연구 등에 대한 지원
3. 해외 우수 전문인력의 발굴·유치에 필요한 지원
4.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7조(특성화 대학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가상융합산업 특성화 대학·대학원·대학부설연구소(이하 “특성화 대학등”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대학부설연구소,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② 가상융합산업 특성화 대학등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산업 특성화 대학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융합산업 특성화 대학등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의 고시로 정한다.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을 받으려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인력, 시설·설비 및 전문지식 보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고, 위탁받을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
2. 위탁사업의 기간에 관한 사항
3. 위탁사업의 수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4. 계약 또는 협약의 변경·해약 및 위반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 업무를 관련 법령에 따른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표준화 지원)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에 드는 비용
2.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및 제안에 드는 비용
3. 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4. 표준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드는 비용
5. 국내외 표준의 적합성 평가 및 상호인정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

• 시설 등의 구입 비용

6. 그 밖에 표준화 관련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제10조(전담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 「전파법」 제66조의2에 따른 한국전파진흥협회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5.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8.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②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가상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2. 가상융합산업 분야 창업 지원 사업
3. 인접 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한 다양한 가상융합서비스등의 발굴, 제작, 유통 등 활성화 지원 사업
4.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이용 기회 확대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행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 또는 법인에 알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협회) ① 가상융합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거쳐 정관을 작성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3. 임원 취임승낙서

4. 사업계획서와 예산의 수입·지출 계획서

③ 제2항제1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존에 설립된 사단법인이 인가 신청을 하는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가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의 설립 인가에 필요한 서류,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2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로 구성되는 별도의 조직을 갖출 것

2. 지원센터의 장은 가상융합산업에 관한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가상융합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일 것

3.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

② 지원센터로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배치계획서

4. 시설명세서

5. 업무 수행체계가 명시된 조직도

6. 지원센터의 장의 이력서

7. 최근 3년간의 가상융합산업에 관한 업무 수행 실적 목록(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지원센터의 지정서(지정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지원센터를 운영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지정의 갱신에 관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절차,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가상융합산업 진흥

제13조(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자금·인력·기술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2. 기업 운영에 필요한 공간 제공
3. 가상융합서비스등의 홍보, 구매 촉진, 판로 개척 등 유통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상융합사업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범사업의 실시 및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범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및 추진 체계
2. 시범사업에 적용될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
3. 시범사업의 실시기간
4.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범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
2. 시범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반 조성
3. 그 밖에 시범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범사업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관련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파급효과

등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제15조(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① 법 제26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해당 가상융합사업에서 개발·운영하려는 가상융합서비스등과 민간에서 운영하는 가상융합서비스등과의 유사·중복성
2. 민간에서 운영하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이용을 통한 목적 달성 가능성
3. 해당 가상융합사업의 공공성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평가항목에 따른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결과서(이하 이 조에서 “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결과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서를 검토한

후 민간 시장의 침해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미리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과 개선조치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개선조치를 요청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의 분야와 관련된 가상융합사업으로서 민간이 서비스하는 것이 부적합한 사업
2. 법 제22조에 따른 시범사업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
4. 그 밖에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상융합사업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의 실시 기한 및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개선조치 요청 및 국가기관등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장 규제의 개선

제16조(임시기준의 제안 등)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임시기준을 제안하고자 하는 가상융합사업자, 협회 등은 임시기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시기준의 명칭 및 내용
2. 임시기준의 적용 범위
3. 임시기준의 제안 이유
4. 임시기준과 관련된 법령
5. 임시기준 관련 해외 사례(해외 사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6.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임시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안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협회 등에게도 보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의견 조회를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임시기준을 마련하거나 정비할 필요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임시기준과 관련된 사항을 금지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시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을 검토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받아 판단한 결과, 임시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임시기준을 마련하거나 정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임시기준의 마련 등 기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시기준을 마련하거나 정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가상융합산업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2. 이용자 편익
3. 안전성 및 위해성
4.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임시기준의 마련 등 절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시기준을 마련하거나 정비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위한 협의체의 구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임시기준을 마련하거나 정비함에 있어 제1항에 따른 협의체(협의체가 구성되는 경우에 한한다)와 가상융합

사업자, 관련 협회·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시기준을 마련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6장 이용자 보호 등

제19조(분쟁해결절차의 마련) ① 법 제31조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가상융합 플랫폼을 통한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2. 가상융합 플랫폼을 통한 연 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3. 가상융합 플랫폼의 3개월 평균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10,000명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는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함에 있어 법 제27조에 따른 자율규제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0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2. 법 제9조에 따른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접수

3. 법 제10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사업
4. 법 제11조에 따른 가상융합기술 개발 촉진 사업
5. 법 제13조에 따른 표준화 지원 사업
6. 법 제16조에 따른 창업 및 민간투자에 대한 지원
7.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정
8. 법 제20조에 따른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지원
9. 법 제23조에 따른 가상융합서비스등 전환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10. 법 제26조에 따른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11. 법 제28조에 따른 임시기준의 마련, 법 제29조에 따른 임시기준의 관리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에 따른 전담기관
2. 법 제18조에 따른 협회
3. 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진흥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부 칙

이 영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지역별 가상융합산업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2조제8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 2)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19조제4항제2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다.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19조제4항제3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라. 지원받은 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법 제19조제4항제4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	
연 락 처	(044) 202 - 6352